



CHOI HONG LEE & KANG LLP
Certified Public Accountants & Consultants

3435 Wilshire Blvd., Suite 480, Los Angeles, CA 90010 T: (213) 365-1700
1 Centerpointe Dr., Suite 350, La Palma, CA 90623 T: (714) 676-8100
3820 Del Amo Blvd., Suite 220, Torrance, CA 90503 T: (310) 542-6373

WWW.CHLKCPA.COM

2023 년 12월 27일

2023/2024 SALES TAX 감사에 대한 유의사항과 알림 **(도매 - WHOLESALE SALES)**

1. Out-of-State (타주) 또는 외국에 판매한 경우, UPS 및 Shipping Company 의 Delivery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. 타주 혹은 외국에 판매한 경우라도 Buyer 가 직접 물건을 Pick Up 하는 경우에는 Sales Tax 가 부과됩니다. 한편, Buyer 의 물건 구입 목적이 Resale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Sales Tax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.
2. California의 Seller's Permit 을 보유하지 않은 타주 혹은 외국의 Buyer 에게도, Resale Certificate 을 받고 Permit # 란에 "I am not engaged in business within California and do not make sal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within California" 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, 그들이 타주 혹은 외국에서 Business 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받으시고 보관해야 합니다 (E.g. Business card, Business registration).
3. California 내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, Buyer 는 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에 해당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. 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미보관 시 Retail Sales 로 간주되므로, Seller 는 Sales Tax 를 납부하게 됩니다.
4. Wholesale 에 대한 Sales Report 는,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에서 지정받은 날짜에 연 1회 시행 합니다. Sale Tax의 징수의 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On-time 에 file 할 것을 권장합니다. Late filing 은 감사의 한 요인이 됩니다.
5. Downtown LA의 Fashion 업체들은 도매업체이나 토요일이나 평일의 Sample Sale 은 소매임으로 Sales Tax 보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. 이를 보고하고 기록을 관리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.
6. 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은 "Retailer 에 대한 Information 기록" 및 "재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고, 만약 물건을 재판매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Use Tax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" 라고 알려주는 Certificate 입니다.

만약 Wholesaler 가 이 Certificate를 Retailer 로부터 수령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,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으로부터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7. 2014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(Manufacturing) 또는 연구개발 (R&D) 관련 사업체는 기계나 장비 구입 시 (최대 \$200,000,000) 주정부 판매세 (Sales Tax) 중 State Portion 세율의 일부 (3.9375%)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Partial Exemption Certificate 또는 Construction Contract 을 받으셔야 합니다.